

##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

의 안 번 호	45
------------------	----

제안일자 : 1996. 2. 16  
제안자 : 운영위원회위원장

### 1. 주 문

신라지증왕 13년 아래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정부의 항만점안시설 공사를 중지하라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망언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내정간섭이고 우리의 역사와 국민에 대한 모독행위이므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일본정부가 자제하고 반성하여 망언을 사과·취소할 것과 우리 정부가 한·일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독도문제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을 촉구함.

### 2. 제안이유

한·일 수교이후 일본은 과거에 대한 반성보다는 이를 합리화하는 망언을 되풀이하여 왔으며 종군위안부 문제조차 국가차원의 배상을 회피하고 항변해 오던 터에 이번에 또다시 독도영유권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망언으로 온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어 이를 규탄하는 한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과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국정부에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고자 함.

### 2. 기 타

본 결의문은 외무부등 관련기관에 송부하고자 함.

##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

1965년 한·일수교 정상화 이후 일본이 과거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하여 진실한 반성을 보이기 보다는 이를 합리화하는 망언을 수없이 되풀이 하는가 하면 유엔인권위원회가 국가적 범죄로 인정하여 배상토록 요구하고 있는 종군위안부 문제까지도 정부차원의 성의있는 배상을 회피한 채 후안무치한 항변만을 일삼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항상 의연한 자세로 대처해 왔음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1996년 2월 9일 느닷없이 이케다 유키히코 일본 외상이 「독도는 일본고유의 영토」라는 억지주장을 펴면서 한국정부의 독도항만 접안시설 건설에 대하여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강변하였으며, 그후 일본 정부가 공식 외교창구를 통하여 「한국은 불법접거중인 독도에서 즉시 철수하고 건조물도 즉각적으로 철거해 달라」고 한국정부에 요구함으로써 우리국민을 온통 분노로 뒤끓게 하고 있는 충격적인 사태에 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는 40만 서초구민을 대표하는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인 서기 512년 아래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또한 지리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영토이기에 한·일간 독도영유권분쟁이란 있을 수 없고 외교교섭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으로서 일본측의 주장을 우리 역사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독도항만 접안시설 공사는 안전한 물자공급과 항해선박의 피난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로서 이는 우리의 정당한 주권행사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일본측의 주장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내정간섭임을 확인한다.

3. 일본측의 주장은 올해부터 국제해양법체제가 출범함에 따른 「2백 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를 위하여 계산된 정략적 발언으로 밖에 볼 수 없는바,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일본정부는 자국내 정치적 수요보다 더욱 소중한 한·일 양국관계가 긴장국면으로 치달아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악화됨으로써 파국에 이르는 불행이 없도록 자제할 것을 경고한다.
4. 21세기 아태시대에 세계중심국으로 도약하여 인류공영에 이바지하여야 할 한·일 양국이 선린우호와 성숙한 국제사회 동반자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정책을 위하여 일본정부는 위와같은 망언을 즉각 사과·취소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5. 정부는 차제에 한·일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독도문제에 관하여 차후 이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1996. 2.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